

# 2025년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예방센터 운영 공모 예산편성 안내사항

- 사업예산은 예산 항목별 세부처리를 따라서 실행가능한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편성하여야 함
  - 사업예산의 비목·세목 구분은 2025년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 운영 공모의 예산 항목별 안내사항을 따라야 함
  - 사업예산은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출해야 함
    - 세부 산출 내역은 기준단가, 인원수, 횟수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
    - 비목별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산출 근거 작성
  - 사용 목적 확인이 불가능한 항목(예비비, 잡비 등) 편성 불가함
- 편성·지출 불가 항목(예시)**
-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(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 등)
  - 불우이웃돕기 성금, 시상금, 협의회 회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
  -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회의비, 간담회비, 기념품 구입비 등
  - 사행성 경비(주점, 골프연습장, 복권방 등) 및 시혜성 경비(간담회 참여자 선물 등)
- 사업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비 변경(운영 주체, 사업내용의 변경 등)이 있는 경우, 지원금액의 삭감 또는 취소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함
  - 사업비 집행시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며 현금 출금 및 거래내역 증빙이 불확실한 오픈뱅킹 사용은 지양함
  - 본 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

상당 부분을 용역 부분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

□ 예산 편성 기준

| 비목  | 세목       | 세 부 내 용  | 편성비율   |
|-----|----------|--|--------|
| 인건비 | 운영인력 인건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운영인력에 대한 보수</li> <li>- 근로기준법 준수 필수</li> <li>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, 퇴직급여, 연차수당 보상비 등 지급 가능</li> <li>※ 인건비를 책정받은 인력은 다른 비목에서 별도의 예산 지급 불가</li> </ul>   | 최대 40% |
|     | 의료지원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, 산부인과 진료비 등</li> <li>- '치료보호대상 확인서'를 통해 부산 소재 사건 당사자 또는 부산 예술인임을 증명하여야 함.</li> </ul>  | 최소 50% |
| 사업비 | 예방교육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 추진을 위한 예방 교육 강사비 등</li> <li>※ 기관 자체 규정 등 별도 사유가 없는 한 부산문화재단 강사수당 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. 자체 규정 적용 시 규정 및 사례 제출 필수</li> <li>- 상세내용은 부산문화재단 강사수당 내역 참고</li> <li>- 각 등급에 맞는 증빙자료 제시(이력서,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) 등 제출</li> </ul>  |        |
|     | 홍보활동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홍보물 제작</li> <li>- 책자(안내 리플릿, 사례집, 사건처리안내서, 부산문화예술현장 가이드라인 등) 제작</li> <li>- 사업운영과 관련한 온라인, 카드 뉴스 등의 제작비용</li> <li>- 사업운영과 무관한 단체 자체 홍보물, 기념품 등 제작 금지</li> </ul>  |        |
|     | 기타 운영비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심의 및 행사 운영 경비, 소모품 구입비 등</li> <li>• 회의진행비(식비 및 다과비) * 회의록 필수첨부</li> <li>- 내부 직원간 회의 진행시에는 사용불가</li> <li>- 회의록 작성 시, 회의목적, 회의내용, 일시, 장소, 참석자 등 기재 필수</li> <li>- 다과비의 경우, 1인당 5,000원 이내 책정 가능 (1인 1회 기준)</li> <li>- 회의 식비는 1인당 15,000원 이내 책정 가능 (1인 1식 기준)</li> <li>※ 동일한 회의에서 다과비, 회의식비 중복 금지</li> <li>※ 기존부터 사용해온 기관 자체 규정 등 별도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. 자체규정 적용 시 규정 및 사례 제출 필수</li> </ul> |        |
| 운영비 | 공공요금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편요금, 전화요금, 인터넷 등 사용료</li> <li>• 세금 및 보험료 등</li> </ul>  | 자율 편성  |
|     | 임차료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근(전담)인력 사무집기 및 전산장비 임차료</li> <li>- 실제 임차에 필요한 최소 경비 편성</li> <li>- 기관 소유의 기자재에 대한 임차료 책정 불가</li> <li>• 장소, 건물, 렌터카 등의 일시 임차료</li> </ul>   |        |
|     | 복리 후생비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</li> <li>- 상근(전담)인력 급여의 10%*채용월수</li> </ul>  |        |
|     | 회계검증 수수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억원이상 2억원미만일 경우 수수료: 848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</li> </ul>   | 필수 편성  |
| 여비  | 국내여비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피해자 동행(병원, 법원 등)을 위한 국내출장 경비</li> </ul>   |        |

- 1인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편성 가능

**[참고1] 부산문화재단 강사 수당**

| 구분    |    | 내 용   | 지급기준(1시간, 원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|   | 기본           |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별 강사 | 1급 | ◦ 전·현직 총리(급) 및 국내외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대표이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 | 1,000,000    | 1,000,000                 |
|       | 2급 | ◦ 전·현직 장관(급)<br>◦ 전·현직 광역자치단체장<br>◦ 전·현직 국회의원<br>◦ 대학교(대학 등 포함) 총장(급)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<br>◦ 대기업 총수(회장)<br>◦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  | 400,000      | 300,000<br>(시간보상 300,000) |
|       | 3급 | ◦ 전·현직 차관(급) 및 기초자치단체장<br>◦ 전·현직 지방의회의장<br>◦ 인간문화재<br>◦ 공공기관의 장<br>◦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 | 300,000      | 200,000<br>(시간보상 200,000) |
| 일반 강사 | 1급 | ◦ 대학교(대학 등 포함) 부교수 이상<br>◦ 기업·기관·단체 등의 임원 및 중역<br>◦ 전·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<br>◦ 전·현직 지방의회의원<br>◦ 판·검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<br>◦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, 언론인<br>◦ 강의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·현직 4·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등<br>◦ 컨설턴트(석사학위 이상 소지자)<br>◦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·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<br>◦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| 250,000      | 120,000<br>(시간보상 120,000) |
|       | 2급 | ◦ 대학교(대학 등 포함) 조교수 이하<br>◦ 전·현직 4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<br>◦ 원어민 어학 강사<br>◦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, 정부출연·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<br>◦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 | 150,000      | 80,000<br>(시간보상 80,000)   |
|       | 3급 | ◦ 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<br>◦ 외국어, 전산 등 강사 및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<br>◦ 일반강사 1·2급 이외의 자<br>◦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  | 100,000      | 60,000<br>(시간보상 60,000)   |
|       | 4급 | ◦ 각종 특별/일반강의, 실기, 실습, 실연 등의 보조자   | 50,000       | 30,000<br>(시간보상)          |

|  |  |  |  |         |
|--|--|--|--|---------|
|  |  |  |  | 30,000) |
|--|--|--|--|---------|